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2. 10(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 1. .
- 나. 제안자 : 김 병 철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4. 1. .
- 라. 상정일자 : 2014. 2. 10.(제213회 임시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김 병 철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 현 기
 - 질의 및 토론
 - 월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친환경 녹색 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국제 도시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
- 최근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는 등 전기차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는 등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신축 등 하고자 건축물에

- 대하여 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비 시민의 수요 반영 및 충전인프라 구축

나. 주요골자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안 제3조의 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기존 건축물 및 신축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를 권장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저탄소·친환경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본 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는 관련 상위법인 건축법 또는 동 건축조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 타 시도 조례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이도형 의원)
⇒ 없음.
- 친환경차 보급현황에 비하여 시기상조 아닌가? (이재병 의원)
⇒ 향후 보급 확대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선언적인 사항임.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이도형, 이재병, 김병철, 정수영, 이재호, 전원기, 전용철 의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자동차 충전설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 및 신축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3조의2(자동차 충전설비)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의한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 의를 위하여 기존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u></p>